



국가간 개인정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

이아름 연구원

요약

■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한-미 FTA · 한-EU FTA 발효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고객정보의 해외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독당국의 감독과 고객정보 유출 시 대응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제기됨. 또한 국가간 정보이전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들은 개인범죄 차원을 넘어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당사국들 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마련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양국간 협력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함.

■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와 한-EU FTA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¹⁾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유럽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고객정보 공유와 해외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 그 동안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²⁾ 한-미 · 한-EU FTA의 본격 시행으로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이 가능해짐.
- 해외 소재 금융정보처리기관에서 국내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내 감독당국의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발생 통지와 유출정보 회수 및 폐기 등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1) 한-미 FTA는 2년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4년 3월 15일부터, 한-EU FTA는 2013년 7월 1일부터 한-미, 한-EU 상호간 금융기관들의 금융정보 이전이 허용되었음.

2)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포함)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제한하여 금융시스템의 해외이전이 어려웠음.

- 최근 3개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도 해당 금융기관들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해외로 이전된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미·한-EU FTA 유예기간 종료로 외국계 은행들보다 외국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금융정보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은행의 경우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외국인 주주가 거의 없어 은행들의 금융정보 해외이전은 활발하지 않을 것임.
- 반면에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국계 회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됨.
 - 알리안츠생명,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다수의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13년 4월 FTA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예고하였고, 수정된 규정이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동 규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업무를 국내외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이전인 경우에도 재위탁이 가능함.
 - 해외 위탁의 경우 위탁 금융회사의 본·지점 및 계열사에 한해 위탁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하였으나 금감원장이 인정할 경우 재위탁이 가능함.
- 한편, 해당 규정에서는 위탁이 금지된 경우나 관련 법령상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정보처리 관련 업무위탁을 제한하고 있음.
 -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 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위탁이 금지됨.

■ 특히, 금융위는 규제를 통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고객 주민번호의 해외이전 자체를 금지하였고,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정보에 대한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정보 주체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도록 규정함.

- 정보처리 업무가 위탁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법상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고객의 주민번호는 이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는 별개로 해외이전 자체가 금지됨.

- 또한 한-미·한-EU FTA 협정문은 ‘민감한 소비자 정보 보호’, ‘민감한 소비자 정보의 무단 재사용 금지’ 등을 포함하여 상호간의 민감한 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합의한 바 있음.
-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상호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
 - EU-멕시코(2000), 미국-싱가폴(2004) 등 여러 국가의 FTA 조항에서도 금융정보의 상호 이전은 허용되어 있음.
 - 미국과 EU는 2000년 7월 Safe Harbor 원칙에 상호간 합의하여 미국 기업들이 7가지 정보보호 항목³⁾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EU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 한편, 2014년 3월 12일 EU의회는 비EU국가로의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 일반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⁴⁾의 최종 법률안을 승인함⁵⁾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임.
 - 미국의 불법 정보수집 스캔들로 인하여 동 개정법안에서 비EU회원국으로의 정보 이동⁶⁾, 제재벌금의 상향조정⁷⁾, 인터넷상 정보보호의 강화⁸⁾ 등이 강화됨.
 -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강화로 미국 기업들의 유럽 내 활동에 제약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EU와 미국 간의 FTA 협의가 지연될 수도 있음.
- 향후 국가간 금융정보 이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범죄 차원을 넘어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여 사전에 정보유출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양국간 협력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첫째,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둘째, 이용자가 필요시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셋째, 국가 간에 적절한 원칙을 따르는 제3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며 넷째,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방안을 마련하고 다섯째, 데이터 무결성 방안을 마련하며 여섯째, 이용자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일곱째, 실효성 담보를 위해 원칙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국제간 거래가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4)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2012)0011 - C7-0025/2012 - 2012/0011(COD)), 일반 법 규정(regulation)에 검경에 의해 취합되는 정보에 관한 지침서(directive)로 구성됨.

5) 김진익(2014), 「EU의회,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안 승인」, KIRI Weekly, 보험연구원.

6) 2013년 발생한 감시활동과 같은 사건으로부터 EU시민의 보호를 위해 어떤 기업이라도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에 공개하기 이전에 EU의 각국 국가정보보호기관(DPA)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7) 본 법 위반 기업은 최고 1억 유로 또는 국제 연간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함.

8) 개인정보의 삭제권리, 정보수집(profiling) 제한 확대,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분명하고 평범한 언어의 사용요청 등.

- 우리나라도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따른 보호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해외에서의 금융정보 유출이 국제법에 의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국 또는 제3국 등 국가별, 지역별 법원의 재판 관할권 및 적용될 법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kiri](#)